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15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김남근·강준현·강훈식

김영환 · 김용만 · 김우영

김 윤 · 김현정 · 문금주

민병덕 • 박수현 • 박지혜

박희승 · 송재봉 · 양부남

오기형 • 오세희 • 이강일

이광희 • 이기헌 • 이병진

이용우 • 이훈기 • 임광현

장종태 • 전진숙 • 정성호

정준호 • 조인철 • 채현일

허성무 · 황정아 의원

(3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는 사례,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에 소비자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 등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응하지못해 기업의 주가나 가치가 폭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한 정보 및 회사의 전략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이외에도 선진국에서는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표결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함. 세이온클라이밋은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되, 결의 대상은 회사뿐 아니라 연결종속회사의 기후전략 등을 포함하고 기후전략은 3년마다, 이행현황은 1년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나권고적 효력만 가지게 함.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탄소 중립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기후전략을 수립하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탄소증립 이행에 관한의무를 부과하고자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게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제4호의3, 제160조의2, 제165조의21 신설)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의 배출량,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감축 전략 및 기후변화 대응 계획

4의3. 4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의 감축 전략 및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이행 현황

제160조 후단 중 "제3호 및 제3호의2는"을 "제3호·제3호의2·제4호의 2 및 제4호의3은"으로 한다.

제1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의2(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지속가 능보고서(이하 "지속가능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속가능보고 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②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 ③ 지속가능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59조제1항 후단, 제6항, 제7항, 제161조의2, 제162조부터 제16 5조까지의 규정은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편제3장의2에 제165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5조의21(기후변화 대응계획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하 "기후전략"이라 한다)을 해당 법인의 이익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탄소 중립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종속회사의 기후전략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기후전략의 수립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 1. 기후전략: 3년. 다만, 기후전략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내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2. 기후전략에 따른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이행: 1년

③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이사회는 기후전략,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4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0조"를 "제160조, 제160조의2"로, "사업보고서"를 "사업보고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60조"를 "제160조, 제160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60조"를 "제160조, 제160조의2"로 한다.

제446조제28호 중 "제160조"를 "제160조, 제160조의2제1항"으로, "분기보고서"를 "분기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1항제4호의2, 제4호의 3 및 제1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법인은 그보다 1년 후에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u>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u>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이하 "온실가스"라 한다)의
	배출량, 온실가스의 감축 목
	표ㆍ 감축 전략 및 기후변화
	대응 계획
<u><신 설></u>	4의3. 4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
	의 감축 전략 및 기후변화 대
	응 계획의 이행 현황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
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출)
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	

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 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 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 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 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 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 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 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 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 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 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 3호의2는 제외한다) • 제4항 •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 설>

<u>제3호·제</u>
<u>3호의2ㆍ제4호의2 및 제4호의3</u>
<u> </u>
제160조의2(지속가능보고서의 제
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
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

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지속가 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지속가능보고서 (이하 "지속가능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속가 능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 함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 ③ 지속가능보고서 제출대상법 인은 지속가능보고서에 그 법 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 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 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 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신 _설>

④ 제159조제1항 후단, 제6항, 제7항, 제161조의2, 제162조부 터 제165조까지의 규정은 지속 가능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5조의21(기후변화 대응계획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하 "기후전략"이라 한다)을 해당 법인의 이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3조의 탄소 중립에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수립하여야한다.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법인은 종속회사의 기후건략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기후전략의 수립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마다정기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1. 기후전략: 3년. 다만, 기후전 략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②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경우에는 기간 내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2. 기후전략에 따른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 기후변화 대응계
 획 및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이행: 1년
- ③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이사회는 기후 전략,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온 실가스의 감축목표에 대한 이 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 과를 6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 여야 한다.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60조, 제160조의2
<u>사업보고서등</u>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 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 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 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 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159조제1항, <u>제160조</u>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 2. 제159조제1항, <u>제160조</u>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 ⑥ (생 략)

-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27. (생 략)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

1	-제160조, 제1
60조의2	
	- <u>제160조, 제1</u>
<u>60조의2</u>	
	حا () \
④ ~ ⑥ (현행과	
446조(벌칙) 	
 1. ~ 27. (현행과	간은)
28제16	

61조제]	항을	위반	하여	사	업
보고서	• 반기	보고서	· <u>분</u>	<u>- 기</u>	보
<u>고서</u> 나	주요/	사항보	고서	를	제
출하지	아니형	한 자			

29. ~ 63. (생 략)

의2제1항
분기보고서·지속가
<u> 능보고서</u>
29. ~ 63. (현행과 같음)